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5일

3. 제안이유

- 상위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관련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구체적 지원근거를 명시

4.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유기”, “사업자” 정의 개정(안 제2조)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4조)
-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 시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
의무조항 신설(안 제5조)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
으로 명시(안 제12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우경수)

가. 제출배경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추이는 '09년 최고치 기록 후 저농약 인증 폐지로 감소되다가 최근 몇 년 간 소폭 증감을 반복, 정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요구로 친환경농산물 시장과 유기농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 친환경농산물 시장 : (15)1.3조→(16)1.4조→(18)1.8조→(20)2.5조→(25)4조
 - ※ 유기농식품 시장 : (10)3,777억원→(15)5,781억원→(20)6,817억원
- 최근 친환경농업 육성은 과거의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생산결과에서 건강한 생태계 유지 등 생산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면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이에 맞게 우리도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검토내용

- 안 제2조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 “유기(Organic)”, “유기식품”,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개정함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19.8.27.(시행 : '20. 8.28.) “친환경농어업”, “유기” 정의를 개정함

-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의 용어 정의를 농어업을 통한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부합되도록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의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생산과정의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

- 안 제4조는 사업자의 책무를 확대하여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5조는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시행 시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친환경단체 등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 안 제12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2)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1.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자재 지원
3.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4.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보급
5.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
6.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7. 친환경농업 가공·체험·관광 기반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8.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육성
9.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종합 검토의견

- 상위법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